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 예비창업자에 대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53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애인 예비창업자에 대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태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7.

3. 회부연월일 : 2026. 3.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이동, 서류·행정
업무, 거래처 응대 등 실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창업 자체가 지연·
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현행 장애경제인에서 장애
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
조의3제1항).

Ⅲ. 검토의견

1. 장애인 예비창업자에 대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예비창업자도 추가로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 예비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거나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직업생활 및 창업·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
<신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예비창업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이하 ‘중증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을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²⁾에서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업무지원 범위 및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개요

- (근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 *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22.9.6.) → 법안 가결('23.5.25.) → 법안 시행('23.12.21.)
- (지원내용)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업무보조, 의사소통, 경영지도 등 서비스 제공
- ('26년 예산) 17.8억원³⁾(115개사* 내외)
 - * (지원규모) '25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추정 수(11,519개사)의 1%
- (시행주체)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업무지원인 서비스”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이하 “중증장애경제인”이라 한다) 중 기업 경영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업무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유형: 업무보조형(중증장애경제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
2. 제2유형: 의사소통형(중증장애경제인의 의사소통 지원)
3. 제3유형: 경영지도형(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세부사업 ‘장애인기업 육성(4234-303)’의 내역사업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의 내내역사업 중 하나로 ‘업무지원인 서비스’ 17.8억원(115개사×15백만원)이 26년 예산에 신규 반영되었음.

그러나 현행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도는 그 지원 대상을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창업 준비 단계에 있는 중증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중증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관계 기관 방문·상담, 거래처 응대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실무 전반에 걸쳐 상당한 제약⁴⁾이 수반되는바, 이러한 지원의 공백은 중증장애인에게 창업 진입 자체의 장벽으로 작용하여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⁵⁾이 제기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증장애인 예비창업자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창업 육성’ 사업⁶⁾과 연계하여 창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때부터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중증장애인의 창업 활성화에 보다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⁷⁾.

4)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규모 1인 사업체의 창업 준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38.6%)외에 창업 관련 다양한 정보 부족(27.1%), 판로확보 및 마케팅의 어려움(16.9%), 창업에 대한 전반적 지식,능력,경험의 부족(4.5%) 등이 있음.(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25.3)

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26. 4. 24., pp.55~58.

6) 세부사업 ‘장애인기업 육성(4234-303)’의 내역사업으로,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창업아이템 발굴, 창업사업화(물품, 인테리어비 등),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임. (26년 예산: 3,019백만원)

7) 국회입법조사처,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2434호, 2025.11.27.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 추진 시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우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업 준비 단계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가 직면하는 행정적·실무적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등 구체적인 지원수단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창업 준비 단계에서 직면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예비 창업 단계부터 사업 운영 단계까지 지원 체계의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4.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5.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7.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지식·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2.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의 성별이 여성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장애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 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연속성을 확보하여,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⁹⁾.

다만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예비창업자까지 확대될 경우,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의 가중 및 기존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바,

기획예산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할 경우 기존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 ‘장애인창업 육성’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실제 경영활동을 하는 중증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집중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현행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준¹⁰⁾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중증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배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제1차(24~28)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에서 장애인 창업희망자 및 창업기업 육성 등을 통한 장애인 자립 실현을 정책방향 중 하나로 담고 있음.(제1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4.8)

1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업무지원인 서비스”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이하 “중증장애경제인”이라 한다) 중 기업 경영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¹¹⁾되어 있는바, 동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창업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예정¹²⁾이므로 이에 수반되는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신체적·실무적 한계로 인해 창업 준비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창업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

1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912호)

12)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는 전년도 창업교육을 수료한 예비창업자(230명)의 10%인 23명 내외 기준 3.6억원이라고 설명함.